

IV-2 체류수속

1. 재입국허가 (일본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

체류기간 사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경우 다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최대 5년간 유효 (단 체류기간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한 단수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또 「단기체제」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있는 사람은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입국허가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 ② 재류카드 (⇒IV-1)
- ③ 여권
- ④ 수입인지 3000엔분 (일회허가) 또는 6000엔분 (복수허가)

재입국허가는 보통 당일내에 발행됩니다. 오사카부내에서의 수속은 오사카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가 도입되어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인 출국 후 1년 이내에 같은 활동을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국시 체류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류기간의 갱신

귀하가 지금 허가를 받은 일본에서의 체류에는 보통 허가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갱신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허가기한이 만료하는 3달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류기간갱신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 ② 여권
- ③ 재류카드
- ④ 지금까지와 이후의 체류활동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오사카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⑤ 사진

허가

서류 등에 따라 심사되어 재류자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한 시점부터 재류카드의 뒷면에 신청중임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허가가 나면 중장기재류자의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3. 재류자격의 변경

귀하가 현재 허가받은 재류자격활동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출국하지 않고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사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필요서류는 변경하려고 하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4. 자격외활동허가

귀하에게 주어진 재류자격외에 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하면 불법취로가 됩니다. 예컨데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새로 입국하는 분 중에 「유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단, 「3개월」을 넘는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에 한해) 에는 입국시 공해항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서류

- ①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② 재류카드
- ③ 여권
- ④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문서